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7. 4.
제 출 자: 고 성 군 수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7. 4.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신설,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시행(2022. 6. 16.)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감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의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정비(안 제2조)
- 나. 신규 체육시설에 따른 사용료 부과 근거 마련 및 정비(안 별표1)
 - 추가: 고성군 야구장, 천천후 테니스장,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 삭제: 공설운동장(이관)
- 다. 반다비체육문화센터 사용허가 장애인 우선순위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 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 정비(안 제13조)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인 스포츠클럽 감면 사항 신설
 -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 사용료의 구분에 따른 감면 사항 정비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감면 사항 신설
- 마.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항 삭제
- 바.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정비
- 사.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성별영향평가[복지지원과-22835(2023. 6. 9.)]: 반영

조례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 해당조항: 제13조(사용료의 감면)제2항, 제3항	□ 제13조(사용료의 감면)제3항 100분의 50 감경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을 추가	□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2항, 제3항 감경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을 추가하여 반영코자 함.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3-964호
 - 가) 예고기간: 2023. 6. 1. ~ 6. 21.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물가대책위원회: 원안가결[경제기업과-25536(2023. 5. 15. 신규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안]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불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운동장·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하며,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료”란 전용사용자(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자(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6.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체육시설(경기장등)”을 “체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연습사용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인이상 경합 시에는”을 “둘 이상일 경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동호인등 다수인”을 “동호인 등 여러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전시등”을 “전시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7. 그 밖의 경기·행사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장애인 우선 사용) 군수는 만다비체육문화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시설의 개방)”을“(체육시설의 개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체육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월간·주간·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중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을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방제한사유”를 “사유로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개방제한 사유”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7조의 제목“(사용제한)”을“(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제4호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장 거절 및”을 “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란케”를 “문란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3월부터 10월까지를 말한다)

가. 조간: 05:00 ~ 08:00

나. 주간: 08:00 ~ 19:00

다. 야간: 19:00 ~ 23:00

2. 동계(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말한다)

가. 조간: 06:00 ~ 09:00

나. 주간: 09:00 ~ 18:00

다. 야간: 18:00 ~ 23:0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체육시설 종류에 따라 사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 ③ 체육시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체육관련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3조제2항제5호 중 “고성군”을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가족”을 “가족을 위한 행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체육시설의 특성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행사

19.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체육관련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사

2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습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1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자”를 “사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연습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체육지도사의 배치)”를 “(체육지도자의 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체육지도사”를 “체육지도자”로 한다.

제22조 중 “구성 운영”을 “구성·운영”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 중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사용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만다비체육문화센터 사용료는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군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u></p> <p>2. <u>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u></p> <p>3. <u>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u></p> <p>4. <u>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용료라 함</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체육시설</u>”이란 「<u>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2조에 따른 시설로서 <u>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운동장·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하며,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포함한다.</u></p> <p>2. “<u>시설의 사용</u>”이란 제1호의 <u>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u></p> <p>3. “<u>전용료</u>”란 <u>전용사용자(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u></p> <p>4. “<u>연습사용료</u>”란 <u>연습사용자(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u></p>

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u>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u>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6. <u>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u>	6.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7. <u>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u>	
8. <u>삭제</u>	
9. <u>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u>	
10. <u>삭제</u>	
11. <u>삭제</u>	
12. <u>삭제</u>	
13. <u>“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나 국제경기 또는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그 가맹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를 말한다</u>	
제3조(사용허가) ① <u>체육시설(경</u>	제3조(사용허가) ① <u>체육시설---</u>

기장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 ----- ----- -----
② <u>체육시설은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허가사항을 변경신고하여야 한다.</u>	<삭 제>
③ <u>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 등)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한 후 영수증으로 허가에 갈음한다.</u>	③ <u>연습사용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u>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u>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u>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 --- <u>둘 이상일 경우</u> ----- ----- <u>따라</u> ----- --.
1. <u>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행사</u>	1.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u>
2. <u>3. (생 략)</u>	2. <u>3. (현행과 같음)</u>
4. <u>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u>	4. ----- <u>동호인 등 여러 명-</u>

<p>참석하는 행사</p> <p>5. (생략)</p> <p>6. 체육활동이외에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p> <p>7. 기타</p> <p><신설></p>	<p>-----</p> <p>5. (현행과 같음)</p> <p>6. -----</p> <p>----- 전시 등 ----</p> <p>7. 그 밖의 경기·행사</p> <p>제4조의2(장애인 우선 사용) 군수는 반다비체육문화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p>
<p>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p> <p>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p>	<p>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등)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체육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월간·주간·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거</p>

<p>1. ~ 3. (생략)</p> <p>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속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나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p> <p>-----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p> <p>④ -----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p> <p>-----</p> <p>--.</p> <p><삭제></p>
<p>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제6조(개방제한) -----</p> <p>--- 사유로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개방제한사유 -----</p> <p>지체 없이 -----.</p> <p>1. ~ 3. (현행과 같음)</p>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신설>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5. 기타 입장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

--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
--

② 제1항제4호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

-- 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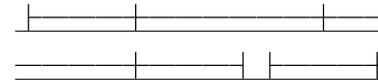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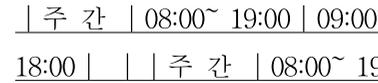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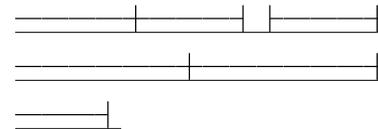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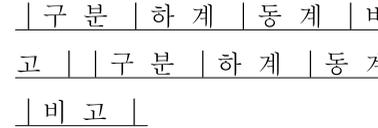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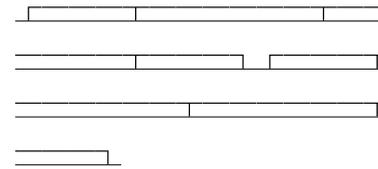
1. ~ 3. (현행과 같음)

4. ----- 문란하게 ----
--

5.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3월부터 10월까지를 말한다)

가. 조간: 05:00 ~ 08:00

나. 주간: 08:00 ~ 19:00

다. 야간: 19:00 ~ 23:00

2. 동계(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말한다)

가. 조간: 06:00 ~ 09:00

나. 주간: 09:00 ~ 18:00

다. 야간: 18:00 ~ 23:00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거 모금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토록 한다. 초과 사용료 납부방법은 지정장소에 납부토록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주·야간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2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체육관련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기본사용료에 한정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나. (생략)
- 3·4. (생략)
5. 고성군 관내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7. ~ 9. (생략)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12. (생략)

- -----
---. -----
---.
1. (현행과 같음)
 2. -----

가·나. (현행과 같음)
 - 3·4. (현행과 같음)
 5.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
 6. 그 밖에 체육시설의 특성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 9. (현행과 같음)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12. (현행과 같음)

1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14. ~ 16. (생략)

17.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

14. ~ 16. (현행과 같음)

17. ----- 가족을 위한 행사

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행사

19.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체육 관련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사

2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습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 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1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

③ (생략)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 시설의 사용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 5. (생략)
- ② 이용,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전용사용자가 반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행사에 참석하는 사람<2017.6.1. 조2336>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 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
 1. 사용자-----

 2. ~ 5. (현행과 같음)
 ② 연습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소지한 사람<2017.6.1. 조233
6>

제16조(사용허가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삭제
 2.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
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삭제
 4. 삭제
 5. 삭제
-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
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
다.

제20조(체육지도사의 배치) 군수
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
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
호에 따른 체육지도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
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삭 제>

제20조(체육지도사의 배치) ----

----- 체육지도사-----
-----.

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
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대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운동장, 체
육관 등)에서 대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
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
장), 임원증, 선수증등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
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구
성·운영-----.

<삭 제>

제25조(위탁관리) -----

----- 「국민체육진흥법」 제2
조에 따른 체육단체 또는 경기
단체-----.

[별표 1] <개정 2014.03.31. 조 2146> <개정 2015.02.16. 조 2190><현행>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기본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시 기	사용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요일 및 공휴일			
실내체육관	조 간	체육경기	1회 1일	8,000	10,000	읍.면에 설치된 체육관 포함		
		체육경기 외	“	15,000	25,000			
	주 간	체육경기	“	30,000	40,000			
		체육경기 외	“	60,000	100,000			
	야 간	체육경기	“	12,000	15,000			
		체육경기 외	“	30,000	40,000			
	공 설 운동장	조 간	체육경기	“	8,000		9,000	
			체육경기 외	“	13,000		15,000	
주 간		체육경기	“	30,000	35,000			
		체육경기 외	“	50,000	60,000			
야 간		체육경기	“	12,000	15,000			
		체육경기 외	“	25,000	35,000			
종합운동장	축구장	조 간	체육경기	1회 3시간	60,000	80,000	축구장 및 육상경기장을 동시 사용시 이를 합산함.	
			체육경기 외	“	100,000	120,000		
		주 간	체육경기	“	120,000	150,000		
			체육경기 외	“	200,000	250,000		
		야 간	체육경기	“	80,000	100,000		
			체육경기 외	“	130,000	160,000		
	육 상 경기장	조 간	체육경기	1회 1일	10,000	13,000		
			체육경기 외	“	15,000	20,000		
		주 간	체육경기	“	40,000	55,000		
			체육경기 외	“	60,000	80,000		
		야 간	체육경기	“	15,000	20,000		
			체육경기 외	“	30,000	40,000		
	동 계 훈련 합숙소	하절기 (3월~10월)	전지훈련	1일 1동	30,000	30,000		
			전지훈련 외	“	40,000	50,000		
		동절기 (11월~다음해2월)	전지훈련	“	40,000	40,000		
			전지훈련 외	“	50,000	60,000		

시설별	시 기	사용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요일 및 공휴일		
스포츠타운	인조잔디 축구장	조 간	체육경기	1회 3시간	50,000	80,000	여러 경기장을 동시 사용시 이를 합산함.
			체육경기 외	“	90,000	140,000	
		주 간	체육경기	“	60,000	90,000	
			체육경기 외	“	100,000	150,000	
		야 간	체육경기	“	50,000	80,000	
			체육경기 외	“	90,000	140,000	
	풋살장	조 간	체육경기	1회 3시간	25,000	35,000	
			체육경기 외	“	35,000	45,000	
		주 간	체육경기	“	30,000	40,000	
			체육경기 외	“	40,000	50,000	
		야 간	체육경기	“	25,000	35,000	
			체육경기 외	“	35,000	45,000	
족구장	조 간	체육경기	1회 3시간	25,000	35,000		
		체육경기 외	“	35,000	45,000		
	주 간	체육경기	“	30,000	40,000		
		체육경기 외	“	40,000	50,000		
	야 간	체육경기	“	25,000	35,000		
		체육경기 외	“	35,000	45,000		
체 육 공 원	조 간	체육경기	1회 3시간	50,000	80,000	읍면에 설치된 체육공원을 말함.	
		체육경기 외	“	90,000	140,000		
	주 간	체육경기	“	60,000	90,000		
		체육경기 외	“	100,000	150,000		
	야 간	체육경기	“	50,000	80,000		
		체육경기 외	“	90,000	140,000		
역 도 전 용 경기장	조 간	체육경기	1회 1일	90,000	100,000		
		체육경기 외	“	100,000	110,000		
	주 간	체육경기	“	95,000	105,000		
		체육경기 외	“	105,000	115,000		
	야 간	체육경기	“	130,000	140,000		
		체육경기 외	“	140,000	150,000		
국 민 체 육 센터	조 간	체육경기	1회 1일	20,000	30,000		
		체육경기 외	“	30,000	50,000		
	주 간	체육경기	“	50,000	70,000		
		체육경기 외	“	100,000	150,000		
	야 간	체육경기	“	20,000	30,000		
		체육경기 외	“	40,000	50,000		

*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5을 가산한다.

2. 전용사용료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 체육공원, 역도전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공통 적용)

사용기간별	사 용 료	비 고
10일 이내	기본사용료 × 사용일수	
10일 초과	기본사용료 × 10일 초과일수 × 0.9	10% 할인
20일 초과	기본사용료 × 20일 초과일수 × 0.8	20% 할인

3. 이용료(연습사용료)

시 설 별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실내체육관 및 국민체육센터	개 인	1회 2시간	300원	
	단 체	1회 2시간	3,000원	
공설운동장	단 체	1회 2시간	3,000원	

※ 단체는 인솔자를 두고 1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한다.

4. 부대시설 사용료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 체육공원, 역도전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공통 적용)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 경기중계료 - TV 중계	1일	10,000원	경기중계료는 주최자 측에서

- 라디오 중계 - 녹화 또는 녹음		5,000원 각 경기중계료의 1/2	부담	
○ 전기 및 수도	1일 1회	30,000원	- 실내체육관, 역도 전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 10일 초과 전용사용자에 대하여는 초과일수 당 50/100을 경감하여 적용한다.	
○ 난방 및 냉방시설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1시간	30,000원	
	역도전용경기장	1시간	20,000원	
○ 조명시설	축 구 장	1회 3시간	25,000원	종합운동장 및 스포츠타운
	풋 살 장	1회 1시간	20,000원	스포츠타운
	체 육 공 원	1회 3시간	25,000원	
○ 영화촬영	1회	10,000원		
○ 선전광고 게시	게시면적 m ² 당 (월 액) 1등급 2등급	5,000원 4,000원	- 1m ² 미만은 1m ² 로 한다. -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 1등급 : 본부석 정면 - 2등급 : 본부석 중심의 좌우	

[별표 1] <개정 2000.00.00>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기본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가산)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시설별	시간/시기	사용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정기체육관	축구장	주간	체육경기	1회 3시간	60,000	80,000	·육상경기장: 1일(주간,주간,야간)사용시 각 요금을 합산 적용함
			체육경기 외	"	100,000	120,000	
		주간	체육경기	"	120,000	150,000	
			체육경기 외	"	200,000	250,000	
		야간	체육경기	"	80,000	100,000	
			체육경기 외	"	130,000	160,000	
	야구장	주간	체육경기	1회	10,000	13,000	
			체육경기 외	"	15,000	20,000	
		주간	체육경기	"	40,000	55,000	
			체육경기 외	"	60,000	80,000	
		야간	체육경기	"	15,000	20,000	
			체육경기 외	"	30,000	40,000	
동호회합숙소	계련소 (3월~10월)	전지훈련	1일 1동	30,000	30,000		
		전지훈련 외	"	40,000	50,000		
	계련소 (11월~다음해2월)	전지훈련	"	40,000	40,000		
		전지훈련 외	"	50,000	60,000		
제공 체육원	주간	체육경기	1회 3시간	50,000	80,000	·읍.면에 설치된 체육공원을 말함	
		체육경기 외	"	90,000	140,000		
	주간	체육경기	"	60,000	90,000		
		체육경기 외	"	100,000	150,000		
	야간	체육경기	"	50,000	80,000		
		체육경기 외	"	90,000	140,000		
야구장	주간	체육경기	1회 3시간	50,000	80,000	·1일(주간,주간,야간) 사용시 각 요금을 합산 적용함	
		체육경기 외	"	90,000	140,000		
	주간	체육경기	"	60,000	90,000		
		체육경기 외	"	100,000	150,000		
	야간	체육경기	"	50,000	80,000		
		체육경기 외	"	90,000	140,000		
전천후 테니스장	-	체육경기	1회 2시간	20,000	30,000	·조명포함	
		체육경기 외	"	30,000	45,000		

시설별	시간/시기	사용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스포츠타운	인조잔디 축구장	주간	체육경기	1회 3시간	50,000	80,000	
			체육경기 외	"	90,000	140,000	
		주간	체육경기	"	60,000	90,000	
			체육경기 외	"	100,000	150,000	
		야간	체육경기	"	50,000	80,000	
			체육경기 외	"	90,000	140,000	
	풋살장	주간	체육경기	1회 3시간	25,000	35,000	
			체육경기 외	"	35,000	45,000	
		주간	체육경기	"	30,000	40,000	
			체육경기 외	"	40,000	50,000	
		야간	체육경기	"	25,000	35,000	
			체육경기 외	"	35,000	45,000	
축구장	주간	체육경기	1회 3시간	25,000	35,000		
		체육경기 외	"	35,000	45,000		
	주간	체육경기	"	30,000	40,000		
		체육경기 외	"	40,000	50,000		
	야간	체육경기	"	25,000	35,000		
		체육경기 외	"	35,000	45,000		
실내체육관	주간	체육경기	1회	8,000	10,000	·읍.면에 설치된 체육관은 실내체육관 사용료 기준을 따름	
		체육경기 외	"	15,000	25,000		
	주간	체육경기	"	30,000	40,000		
		체육경기 외	"	60,000	100,000		
	야간	체육경기	"	12,000	15,000		
		체육경기 외	"	30,000	40,000		
역전경기장	주간	체육경기	1회	90,000	100,000		
		체육경기 외	"	100,000	110,000		
	주간	체육경기	"	95,000	105,000		
		체육경기 외	"	105,000	115,000		
	야간	체육경기	"	130,000	140,000		
		체육경기 외	"	140,000	150,000		
국제센터	주간	체육경기	1회	20,000	30,000	·1일(주간,주간,야간) 사용시 각 요금을 합산 적용함	
		체육경기 외	"	30,000	50,000		
	주간	체육경기	"	50,000	70,000		
		체육경기 외	"	100,000	150,000		
	야간	체육경기	"	20,000	30,000		
		체육경기 외	"	40,000	50,000		
반다비체육문화센터	주간	체육경기	1회	8,000	10,000		
		체육경기 외	"	15,000	25,000		
	주간	체육경기	"	30,000	40,000		
		체육경기 외	"	60,000	100,000		
	야간	체육경기	"	12,000	15,000		
		체육경기 외	"	30,000	40,000		

가. 체육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실내체육관, 전천후 테니스장, 역도전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반다비체육문화센터
 - 조간(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3:00)
- 2) 축구장, 육상경기장, 야구장, 스포츠타운, 체육공원
 - 가) 하계(3월부터 10월까지를 말한다)
 - 조간(05:00~08:00), 주간(08:00~19:00), 야간(19:00~23:00)
 - 나) 동계(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말한다)
 - 조간(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3:00)
- 나.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기를 말한다.
- 다. “체육경기 외”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시회, 집회 등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2. 전용사용료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 체육공원, 역도전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반다비체육문화센터, 야구장, 전천후 테니스장 공통 적용)

사용기간별	사 용 료	비 고
10일 이내	(기본사용료 × 사용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기본사용료 × 10일) + (기본사용료 × 10일 초과일수 × 0.9)	A
20일 초과	A+ (기본사용료 × 20일 초과일수 × 0.8)	

3. 연습사용료

(부가세 포함)

시 설 별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반다비체육문화센터	개 인	1회 2시간	300원	
	단 체	1회 2시간	3,000원	

※ “단체”는 1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부대시설 사용료

(부가세 포함)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 체육공원, 역도전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반다비체육문화센터, 야구장, 전천후 테니스장 공통 적용)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 경기중계료 - TV 중계 - 라디오 중계 - 녹화 또는 녹음		1일	10,000원 5,000원 각 경기중계료의 2분의1	
○ 전기 및 수도	실내체육관, 역도전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반다비체육문화센터	1일 1회	30,000원	- 10일 초과 전용사용자에 대하여는 초과일수 당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적용함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 난방 및 냉방시설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반다비체육문화센터	1시간	30,000원	
	역도전용경기장	1시간	20,000원	
○ 조명시설	축 구 장	1회 3시간	25,000원	종합운동장 및 스포츠타운
	야 구 장	1회 3시간	25,000원	
	풋 살 장	1회 3시간	20,000원	스포츠타운
	체 육 공 원	1회 3시간	25,000원	
○ 영화촬영		1회	10,000원	
○ 선전광고 게시		게시면적 m ² 당 1등급 2등급	5,000원 4,000원	- 1m ² 미만은 1m ² 로 한다. - 게시기간: 최대 1개월 (기간 조정 가능) - 1등급: 본부석 정면 - 2등급: 본부석 중심의 좌우

[별표 2]<현행>

관람수입 사용료 징수(제11조 관련)

-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 관람권 매출액 수입의 20%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 체육공원, 역도전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공통 적용)
- 단,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가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체육경기에 한하여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할인 징수한다.

구 분	할 인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10%
50만원 초과	20%

- 관람권 매출액 수입이 별표 1의 전용사용료에 미달할 경우 기본사용료만 징수한다.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스포츠산업과장 이 중 엽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 「스포츠클럽법」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 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